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862 호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2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 개최빈도가 낮고 비상설로도 위원회 목적달성이 가능한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1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16. ~ 4. 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 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
② 공동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1명과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임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삭 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삭 제>**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